


# 제보처리지침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SK 케미칼


---



	Title	
	제보처리지침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목 차

제1장 총칙 .....	4
제1조 (목적) .....	4
제2조 (적용 범위) .....	4
제3조 (용어정의) .....	4
제4조 (책임과 권한) .....	5
제2장 제보 .....	5
제5조 (윤리 상담/제보 대상) .....	5
제6조 (윤리경영 제보접수) .....	6
제7조 (처리 절차) .....	7
제8조 (처리 기한 및 결과 통보) .....	8
제9조 (정당한 제보의 기준) .....	8
제10조 (협력회사 관련 상담, 제보) .....	9
제3장 제보자의 보호 .....	9
제11조 (제보자 보호의 원칙) .....	9
제12조 (제보자 노출 방지) .....	10
제13조 (제보자 보호 요청) .....	11
제14조 (제보자 신분 보호) .....	12
제4장 기타 .....	12
제15조 (포상금 지급) .....	12
부칙 .....	13

	Title	
	<b>제보처리지침</b>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SK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따른 상담 및 제보의 접수, 상담자, 제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신분 및 신변 보호, 공정한 조사, 심의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 ②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시간제 정규직, 계약직 포함)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해관계자란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주주, 채권자, 소비자, 종업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언론, 환경, 시민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② 협력회사란 회사가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회사를 의미한다.
- ③ 제보란 발생 또는 의심되는 부패 행위, 윤리경영의 모든 위반사항 및 취약점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Title	
	<h1 style="margin: 0;">제보처리지침</h1>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④ 부패(bribery)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 인원의 직무 성과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 또는 제약하도록 유도하거나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가치(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책임과 권한)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른 상담 및 제보의 접수, 조사, 심의, 후속조치 및 이와 관계된 제반업무의 기획, 관리 및 점검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 인사위원회 개최, 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 모든 부서 책임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의 본 규정에 따른 상담 및 제보사건의 조사, 심의, 후속조치 및 이와 관계된 제반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장 제보

#### 제5조 (윤리 상담/제보 대상)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회사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 및 아래 사항에 대하여 상담 혹은 제보(이하 ‘제보’)를 받는다.

- ① 보고의 누락, 지연, 축소, 왜곡 및 자료 허위 작성 등 허위보고

	Title	
	<h2>제보처리지침</h2>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② 회사 자산의 남용, 유용, 횡령 및 기회 편취 등 자산오용
- ③ 업무상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 등 부패
- ④ 사규 위반
- ⑤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과 관계된 사항

### 제6조 (윤리경영 제보접수)

① 제보 채널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이하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 <https://ethics.sk.co.kr> (SK윤리경영통합시스템)

\* SK케미칼 홈페이지([www.skchemicals.com](http://www.skchemicals.com))내 SK윤리경영 상담·제보  
바로가기 Click

2. 전자메일 : [skchemicals.ethics@sk.com](mailto:skchemicals.ethics@sk.com)


3. 전화 : 02)2008-2486

4.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삼평동) SK케미칼(주)

Compliance팀 윤리경영 담당자

②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 전자메일, 전화, 우편, 방문 및 기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제보할 수 있다.

③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는 제보 신청 양식에 따라 제보 내용을 작성한다.


	Title	
	<h1 style="margin: 0;">제보처리지침</h1>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④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제보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보접수 3일 이내에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의 제보 수기등록 양식에 제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 절차)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제보 사항을 SK 윤리경영통합시스템의 제보접수현황에 등록하고 제보내역 및 처리결과 등을 관리한다
- ② 신청 접수된 내용이 제품 등과 관련된 고객불만인 경우 담당부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 ③ 접수된 제보는 먼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고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고사실 자체로 제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신빙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종결할 수 있다.
- ④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 접수된 내용이 회사 경영상 중요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제보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 각 부문의 처리 부서를 결정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각 부문에 처리 의뢰된 경우, 처리부서는 제보 내역의 기밀을

	Title	
	<h2 style="margin: 0;">제보처리지침</h2>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Issue Date: 2023/05/12

준수하여 처리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를 윤리 경영 담당 부서장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 (처리 기한 및 결과 통보)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가 접수되면 60 일 이내에 사실 확인 등 조사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상담/제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보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제보 처리결과 회신 양식을 활용한다.
-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 (정당한 제보의 기준)

- ①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 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당한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인 제보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인 제보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의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내용일 것
  2.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제보내용일 것
  3.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 방법일 것



	Title	
	<h1>제보처리지침</h1>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4.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또는 사적인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


#### 제10조 (협력회사 관련 상담, 제보)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협력회사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협력회사를 상대로 필요한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전항의 조사를 통해 회사의 윤리규범 위반과 관계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구매부서에 통지하여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장 제보자의 보호


#### 제11조 (제보자 보호의 원칙)

- ① 회사는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소속 부서장이나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제보자 신원 및 제보 내용 누설,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Title	
	<h1>제보처리지침</h1>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Issue Date: 2023/05/12

4.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5.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6.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며, 제보조사 담당자 수행지침(별첨1)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8.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소속 부서장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가. 회사는 제보자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에 준하여 그 신분/신변을 보호한다.
- 나. 윤리경영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상담/제보 내용의 접수/조사/후속처리 과정상의 제반 보안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제12조 (제보자 노출 방지)

	Title	
	<h2 style="margin: 0;">제보처리지침</h2>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 내용의 접수, 조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변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접수, 조사, 후속처리의 전체 과정에서 기록관리시 제보자의 신분 추정이 가능한 내용을 최소화한다.
  2.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며, 만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노출방지 대책을 수립/실행 후 조사를 재개한다.
- ② 제보조사 담당자가 제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단, 아래 예외 조항의 경우 면책할 수 있다.
1.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2. 중요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 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 보도 사항 등
- ③ 회사 임직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 (제보자 보호 요청)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신분, 신변

	Title	
	<h2>제보처리지침</h2>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Issue Date: 2023/05/12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인사부서장과 협의하고 내부승인을 득하여 부서이동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보자 신분 보호)

- ① 정당한 제보를 한 제보자에게 이것을 이유로 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을 차별하는 등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인사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제보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제4장 기 타

#### 제15조 (포상금 지급)

회사는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 또는 가치제고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Title	
	<b>제보처리지침</b>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3/05/12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1. 제보조사 담당자 수행지침

<p><b>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보조사 담당자 수행 지침</b></p> <p>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li> <li>▪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시건 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li> <li>▪ 조사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따른다. 단, 하기 예외 조항의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li> <li>· 중요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 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 보도 사항 등</li> </ul> </li> <li>▪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은 제보조사와 관련한 제반 보안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li> </ul>
--